

□ 공고 제2018-22호

이사회 의 심 의 · 의 결 과 충 청 북 도 승 인 을 얻 은 충 청 북 도 청 주 의 료 원 직 제 규 정 일 부 개 정 규 정 을 이 에 공 포 한 다.

2018. 3. 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38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제12호 중 “의료기관평가인증, 운영평가”를 “운영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기관평가인증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제16조 (업무분장) ①~⑦ (생 략) ⑧ 기획홍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1. (생 략) 12. <u>의료기관평가인증, 운영평가</u>, 응급의료기관평가 13.~15 (생 략) ⑨~⑮ (생 략) ⑯ QI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체적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u><신 설></u> ⑰·⑱ (생 략)	제16조 (업무분장)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 1.~11. (현행과 같음) 12. <u>운영평가</u>, 응급의료기관평가 13.~15 (현행과 같음) ⑨~⑮ (현행과 같음) ⑯ ----- 1. ----- <u>2. 의료기관평가인증</u> ⑰·⑱ (현행과 같음)

[별표 1] 현행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 종	직 급	계	임 원	계 약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574	1	64	6	39	99	179	163	23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06		63	4	33	86	154	146	20	
	의 무 직			50		50							
		의 사		44		44							
		치 과 의		4		4							
		한 의 사		2		2							
	약사/한약사			13		13							
	간 호 사			278			2	27	62	104	83		
	의 료 기 술			87			2	6	19	36	24		
		임 상 병 리 사		19									
		방 사 선 사		17									
		물 리 치 료 사		17									
		작 업 치 료 사		7									
		치 과 위 생 사		6									
		사 회 복 지 사		5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응 급 구 조 사		4									
		산업위생기사		2									
		의 무 기 록 사		3									
		영 양 사		5									
	간 호 조 무 사			78					5	14	39	20	
일 반	소 계			67		1	2	6	13	25	17	3	
	관 리			42		1	2	6	11	17	5		
		행 정		33									
		전 기 기 사		9									
		열 관 리 사											
		환 경 기 사											
		건 축 기 사											
		산업안전기사											
	의 공 기 사												
	기 능			25					2	8	12	3	
		운 전 사		1									
		조 리 사		1									
사 무 원		13											
장 례 지 도 사		8											
기 계 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별표 1] 개정

정 원 표

직군	직렬	직 급	계	임 원	계 약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574	1	64	6	39	99	180	163	23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06		63	4	33	86	154	146	20
	의 무 직		50		50						
	의 사	의 사	44		44						
		치 과 의	4		4						
		한 의 사	2		2						
	약사/한약사		13		13						
	간 호 사		278			2	27	62	104	83	
	의 료 기 술		87			2	6	19	36	24	
	의 료	임 상 병 리 사	19								
		방 사 선 사	17								
		물 리 치 료 사	17								
		작 업 치 료 사	7								
		치 과 위 생 사	6								
		사 회 복 지 사	5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응 급 구 조 사	4								
		산업위생기사	2								
		의 무 기 록 사	3								
		영 양 사	5								
	간 호 조 무 사		78					5	14	39	20
일 반	소 계		67		1	2	6	13	26	17	3
	관 리		42		1	2	6	11	17	5	
	행 정	행 정	32								
		전 기 기 사	10								
		열 관 리 사									
		환 경 기 사									
		건 축 기 사									
		산업안전기사									
		의 공 기 사									
		소 방 기 사									
	기 능		25					2	8	12	3
	기 계 원	운 전 사	1								
		조 리 사	1								
		사 무 원	13								
		장 례 지 도 사	8								
		기 계 원	2								

※ 공중보건의사는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

이사회는 심의·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제4조 중 “의공기사”를 “의공기사, 소방기사”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제4조 (직종 등) 직원의 직종은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행정, 영양사, 의무기록사, 산업위생기사,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u>의공기사</u> , 운전사, 조리사, 장례지도사, 기계원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 등 구분과 직급과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직종 등) ----- ----- ----- ----- ----- <u>의공기</u> <u>사, 소방기사</u> ----- ----- -----

[별표 1] 현행

직원의 직종 등 구분과 직급 및 직위

직군	직렬	직급 직종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위							
일반	관리	행정			[4급 내지 6급] 부서 각 팀장 [4급 내지 9급] 행정직 직원 열관리사, 전기기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의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1. 각 부장의 직종, 직위, 직급은 직제규정 제6조에 의한다.
2. 건강검진팀장, 공공의료팀장은 의료, 일반 직군 중 4급 내지 6급 직원 중에 보한다.

[별표 1] 개정

직원의 직종 등 구분과 직급 및 직위

직군	직렬	직급 직종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위							
일반	관리	행정			[4급 내지 6급] 부서 각 팀장 [4급 내지 9급] 행정직 직원 열관리사, 전기기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의공기사 산업안전기사, <u>소방기사</u>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u>소방기사</u>								

1. 각 부장의 직종, 직위, 직급은 직제규정 제6조에 의한다.
2. 건강검진팀장, 공공의료팀장은 의료, 일반 직군 중 4급 내지 6급 직원 중에 보한다.

□ 공고 제2018-24호

이사회 심의·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 3. 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세칙 제121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면접전형은 원장이 정한 면접위원 3~5인이 실시하되, 외부 관련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주차관리 업무
- 8. 병동도우미 업무
- 9. 국제진료 도우미 업무

별표1 직종별 자격기준의 직종란에 “소방기사”를 신설한다.

별표2 기본급의 세부기준란 중 “국제진료도우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
제8조 (면접전형) ①면접전형은 인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5인이 실시하고 면접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②·③ (생략)	제8조 (면접전형) ①면접전형은 원장이 정한 면접위원 3~5인이 실시하되, 외부 관련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임용)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인원은 단기고용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제8호의 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1. ~ 5. (생략) 5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6. (생략) 7. (생략) 8. (생략) ④ (생략)	제17조 (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2호-- --- 1. ~ 5.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u>7. 주차관리 업무</u> <u>8. 병동도우미 업무</u> <u>9. 국제진료 도우미 업무</u> 10. (현행 제6호와 같음) 11. (현행 제7호와 같음)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직종별 자격기준

직 종	자 격 기 준
의 사	의사면허증소지자 (치과를 제외한 진료과장은 전문의자격증소지자)
한 의 사	한의사면허증소지자 (전문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전문의자격증소지자)
약 사	약사면허증소지자
한 약 사	한약사면허증소지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자격증소지자
간 호 사	간호사면허증소지자
임 상 병리사	임상병리사면허증소지자
방 사 선 사	방사선사면허증소지자
물 리 치료사	물리치료사면허증소지자
작 업 치료사	작업치료사면허증소지자
치 과 위 생 사	치과위생사면허증소지자
응 급 구조사	응급구조사2급이상자격증소지자
사 회 복 지 사	사회복지사1급이상자격증소지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2급이상자격증소지자
간 호 조무사	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
행 정	해 당 없 음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전산실 근무직원)
영 양 사	영양사면허증소지자
의 무 기록사	의무기록사면허증소지자
산업위생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전 기 기 사	전기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열 관 리 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 보일러취급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 열관리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환 경 기 사	환경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건 축 기 사	건축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의 공 기 사	의공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운 전 사	대형운전면허소지자
조 리 사	조리기능사자격증소지자
장례 지도사	장례지도사자격증소지자

직종별 자격기준

직 종	자 격 기 준
의 사	의사면허증소지자 (치과를 제외한 진료과장은 전문의자격증소지자)
한 의 사	한의사면허증소지자 (전문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전문의자격증소지자)
약 사	약사면허증소지자
한 약 사	한약사면허증소지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자격증소지자
간 호 사	간호사면허증소지자
임 상 병리사	임상병리사면허증소지자
방 사 선 사	방사선사면허증소지자
물 리 치료사	물리치료사면허증소지자
작 업 치료사	작업치료사면허증소지자
치 과 위 생 사	치과위생사면허증소지자
응 급 구조사	응급구조사2급이상자격증소지자
사 회 복 지 사	사회복지사1급이상자격증소지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2급이상자격증소지자
간 호 조무사	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
행 정	해 당 없 음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전산실 근무직원)
영 양 사	영양사면허증소지자
의 무 기록사	의무기록사면허증소지자
산업위생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전 기 기 사	전기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열 관 리 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
	보일러취급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
	열관리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환 경 기 사	환경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건 축 기 사	건축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의 공 기 사	의공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소 방 기 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이상자격증소지자
운 전 사	대형운전면허소지자
조 리 사	조리기능사자격증소지자
장례 지도사	장례지도사자격증소지자

[별표 2] 현행

보수종류별 지급기준

종 류	담당업무별 지급대상	세 부 기 준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시기
기본급	단시간 근로자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노동부고시 최저지급 × 근로시간	매월 말일
		출장검진 및 일반검진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 11,000원(시간당)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무기계약직 및 단기고용직	시설관리 관련 산업기사	월 1,210,540원	매월 말일
		민원업무전담, <u>병동도우미</u> , <u>국제진료도우미</u>	월 1,192,750원	
		영양실 조리원	월 1,276,080원 · 3년이상 ~ 11년미만 재직자는 2년 마다 기본급 2% 가산	
		장례식장 조리원	월 1,256,420원 · 3년이상 ~ 11년미만 재직자는 2년 마다 기본급 2% 가산	

[별표 2] 개정

보수종류별 지급기준

종 류	담당업무별 지급대상	세 부 기 준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시기
기본급	단시간 근로자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노동부고시 최저지급 × 근로시간	매월 말일
		출장검진 및 일반검진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 11,000원(시간당)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무기계약직 및 단기고용직	시설관리 관련 산업기사	월 1,210,540원	매월 말일
		민원업무전담, <u>병동도우미</u>	월 1,192,750원	
		영양실 조리원	월 1,276,080원 · 3년이상 ~ 11년미만 재직자는 2년 마다 기본급 2% 가산	
		장례식장 조리원	월 1,256,420원 · 3년이상 ~ 11년미만 재직자는 2년 마다 기본급 2% 가산	

□ 공고 제2018-25호

이사회 의 심 의 · 의 결 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 3. 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강령 제442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3만원·10만원·5만원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3만원·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4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 략) 1. (생 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각각 <u>3만원·10만원·5만원의</u>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8. (생 략) ④~⑥ (생 략)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3만원·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의 ----- 3.~8.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별표 2] 현행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단위 : 천원/1시간)

구 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0	300	200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단위 : 천원/1시간)

구분	임직원
상한액	400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외 부 강 의 등 신 고 서 (월)						
신 고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강의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 ☐ 기타()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시(시간)		()		대 가		
※ 월별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하되, 당해 월의 이전 강의도 포함하여 신고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 개정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 . . ~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공고 제2018-26호

이사회 의 심 의 · 의 결 과 충 청 북 도 승 인 을 얻 은 충 청 북 도 청 주 의 료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규 정 을 이 에 공 포 한다.

2018. 3. 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40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현행

제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당 종류	지 급 대 상	지급률 지급액
1. 가족 수당	○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급인원은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부양가족에 포함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심한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부부가 모두 의료원 직원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	○ 배우자 : 40천원 ○ 기타 부양가족 : 20천원(1인/월) ○ <u>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30천원 가산(월)</u>

[별표 5] 개정

제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당 종류	지 급 대 상	지급률 지급액
1. 가족 수당	(현행과 같음)	○ 배우자 : 40천원 ○ 기타 부양가족 : 20천원(1인/월) ○ <u>자녀</u> - 첫째자녀 : 20천원 - 둘째자녀 : 60천원 -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100천원

□ 공고 제2018-27호

이사회 의 심 의 · 의 결 과 충 청 북 도 승 인 을 얻 은 충 청 북 도 청 주 의 료 원 실 적 수 당 지 급 시 행 세 칙 일 부 개 정 세 칙 을 이 에 공 포 한 다.

2018. 3. 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세칙 제122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실적수당지급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실적수당지급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605백만원으로 설정하며”를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제11조 (목표설정) 특수사업부서의 월단위 목표액은 <u>605백만원으로 설정하며</u> , 연 4회 이상 월 목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목표액을 상향한다. <u>단, 목표설정은 병원경영환경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u>	제11조 (목표설정) ----- -- <u>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u> , 연4회 이상 월 목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목표액을 상향한다.

□ 공고 제2018-28호

이사회 의 심 의 · 의 결 과 충 청 북 도 승 인 을 얻 은 충 청 북 도 청 주 의 료 원 환 자 급 식 관 리 규 정 일 부 개 정 규 정 을 이에 공 포 한 다.

2018. 3. 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세 칙 제441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간호사는 식사처방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전산 입력”을 각각“식사 처방”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제10조 (식사처방) ①~② (생략) ③ <u>간호사는 식사처방에 의하여 다음 각 호</u> <u>의 시간까지 전산 입력</u>하여야 하며, 마감이후 식사변경 및 추가는 영양실로 연락하고 <u>전산</u> <u>입력</u>한다. 1.~3. (생략)	제10조 (식사처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식사 처방</u>----- ----- -----<u>식사</u> <u>처방</u>--- 1.~3. (현행과 같음)